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정) 1998-03-01 학칙 제001호
(개정) 1999-02-19 학칙 제043호
(개정) 1999-11-22 학칙 제052호
(개정) 1999-12-06 학칙 제064호
(개정) 2000-10-19 학칙 제076호
(개정) 2001-01-04 학칙 제103호
(개정) 2001-04-26 학칙 제107호
(개정) 2001-12-12 학칙 제120호
(개정) 2002-01-28 학칙 제124호
(개정) 2002-07-02 학칙 제125호
(개정) 2003-11-03 학칙 제136호
(개정) 2004-04-30 학칙 제140호
(개정) 2004-06-12 학칙 제151호
(개정) 2004-06-25 학칙 제152호
(개정) 2004-09-23 학칙 제154호
(개정) 2005-11-18 학칙 제157호
(개정) 2006-03-06 학칙 제164호
(개정) 2006-08-14 학칙 제175호
(개정) 2007-02-26 학칙 제177호
(개정) 2008-02-29 학칙 제186호
(개정) 2008-03-18 학칙 제188호
(개정) 2008-08-18 학칙 제192호
(개정) 2008-10-21 학칙 제193호
(개정) 2009-02-26 학칙 제199호
(개정) 2009-06-15 학칙 제206호
(개정) 2009-12-10 학칙 제215호
(개정) 2010-02-08 학칙 제224호
(개정) 2010-05-03 학칙 제228호
(개정) 2010-06-30 학칙 제265호
(개정) 2011-01-11 학칙 제270호
(개정) 2011-02-24 학칙 제273호
(개정) 2012-01-25 학칙 제277호
(개정) 2012-10-15 학칙 제281호
(개정) 2013-01-18 학칙 제314호
(개정) 2013-06-25 학칙 제322호
(개정) 2013-07-29 학칙 제334호
(개정) 2014-02-28 학칙 제351호
(개정) 2014-12-24 학칙 제357호
(개정) 2015-02-26 학칙 제360호
(개정) 2015-03-13 학칙 제361호
(개정) 2015-03-26 학칙 제365호
(개정) 2016-02-04 학칙 제380호
(개정) 2016-02-05 학칙 제384호

(개정) 2016-02-18 학칙 제385호
 (개정) 2016-02-22 학칙 제390호
 (개정) 2016-04-11 학칙 제395호
 (개정) 2016-04-25 학칙 제397호
 (개정) 2016-08-01 학칙 제415호
 (개정) 2016-11-23 학칙 제429호
 (개정) 2017-02-21 학칙 제451호
 (개정) 2017-03-22 학칙 제456호
 (개정) 2017-04-21 학칙 제463호
 (개정) 2017-06-30 학칙 제474호
 (개정) 2017-10-16 학칙 제478호
 (개정) 2017-12-29 학칙 제485호
 (개정) 2018-02-13 학칙 제487호
 (개정) 2018-05-24 학칙 제494호
 (개정) 2019-02-28 학칙 제509호
 (개정) 2019-03-18 학칙 제514호
 (개정) 2019-06-24 학칙 제522호
 (개정) 2019-07-30 학칙 제530호
 (개정) 2019-10-02 학칙 제536호
 (개정) 2019-12-17 학칙 제539호
 (개정) 2020-02-18 학칙 제540호
 (개정) 2020-07-15 학칙 제547호
 (개정) 2020-11-09 학칙 제555호
 (개정) 2021-03-29 학칙 제568호
 (개정) 2021-08-12 학칙 제580호
 (개정) 2021-11-29 학칙 제584호
 (개정) 2022-04-25 학칙 제598호
 (개정) 2023-01-10 학칙 제623호
 (개정) 2023-02-23 학칙 제624호
 (개정) 2023-04-28 학칙 제628호
 (개정) 2023-06-21 학칙 제638호
 (개정) 2023-09-04 학칙 제642호
 (개정) 2024-02-28 학칙 제669호
 (개정) 2024-04-02 학칙 제682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는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2조(명칭) 본 대학교는 강원도립대학교라 한다. 〈개정 2016.4.25〉

제3조(위치) 본 대학교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둔다.〈개정 2012.10.15., 2016.4.25〉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과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

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6., 2009.2.26., 2009.12.10., 2011.2.24., 2013.1.18., 2014.2.28., 2015.2.26.,
 2016.2.18., 2016.4.25., 2017.2.21., 2017.6.30., 2019.10.2., 2020. 7. 15., 2021.8.12.,
 2023.06.21.〉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인문사회	사회복지과	30명	공학	소방환경방재과	25명
	경찰경호과	20명		건설지적토목과	25명
	호텔관광과	25명		해양경찰과(3년제)	25명
자연과학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2명		드론융합과	32명
	스마트해양양식과	20명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30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40명	합계		314명

② 학과설치 및 폐지 등 학과개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가 따로 정한 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8., 2016.4.25.〉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해양경찰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외의 과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4.25., 2019.10.2. 2024.02.28.〉
- ②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에 따라 수업연한 2년제는 3학기로, 3년제는 5학기로 단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2.28.〉

- 제6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4.02.28.〉
- ② 삭제 〈개정 2016.4.25., 2024.02.28.〉
- ③ 삭제 〈개정 2016.4.25., 2024.02.28.〉
- ④ 삭제 〈개정 2016.4.25., 2024.02.28.〉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8조(학기 등)**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
-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2주 범위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 ② 삭제〈2010.5.3.〉
- ③ 삭제〈2010.5.3.〉
-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 실습학기, 집중학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 ⑤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학기 또는 유연학기를 운영할 수 있

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7. 15.>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개정 2019.3.18.>

②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0.5.3., 2020. 7. 15.>

③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27조제1항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9.3.18.>

제1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개정 2010.5.3., 2017.4.21.>

1. 삭제<2010.5.3.>

2. 삭제<2010.5.3.>

3. 삭제<2010.5.3.>

4. 삭제<2010.5.3.>

5. 삭제<2010.5.3.>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삭제<2010.5.3.>

④ 삭제<2010.5.3.>

제10조의 2(휴업일 제외) 삭제<2010.5.3.>

제 4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① 입학허가 시기는 학년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23.09.04.>

② 편입학, 재입학 및 시간제등록생 입학허가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한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입학전형) 신 입학 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시전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시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의2(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 유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입학전형영향 평가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5.3.26.><개정 2016.4.25.>

제15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 관리위원은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7조(2중학적 금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개정 2016.4.25.〉

제18조(편입학) ① 전문대학교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 폐과된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 학과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9조(전과) ① 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제1학년 2학기 초 또는 제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지된 학과의 학생에 대한 전과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6.30., 2018.02.13., 2020. 7. 15.〉

③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3.〉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과는 허가하지 않는다.

1. 예·체능 특기자로 입학한 자
2. 전입학과의 교육여건상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적하였던 동일 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 4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22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3분의1선을 초과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9. 2023.09.04.〉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 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사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07.29., 2024.02.28.〉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2조의2(창업휴학) ①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창업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아 휴학신청서와 관련증빙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업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4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③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6.30., 개정 2024.02.28.>

제2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하고 보호자의 동의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과 학생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7.29.,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제2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3.7.29.>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3분의1을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 한 자<개정 2023.09.04.>

2. (삭제)

3. (삭제)

4. 3개 학기 연속 학사경고 처분 등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3.7.29., 2024.02.28.>

5. 타 교에 입학한 자

6. (삭제)

7.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의견 진술을 원할 경우 총장은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과 및 수업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역량기반전공, 교양비교과, 역량융합 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교양인 경우 최소 6학점, 전공인 경우 2년제 최소 50학점, 3년제 최소 80학점으로 하고 전공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실험실습이 현저히 적은 학과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3.6., 2016.8.1., 2020.7.15., 2021.3.29., 2021.11.29., 2024.02.28.>

② 삭제<2020. 7. 15.>

③ 교양 교육과정은 직무분석 및 산업체 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며, 핵심역량기반 교과목을 중심으로 비교과프로그램 활용 등 역량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신설 2016.4.11.><개정 2020.2.18., 2020.11. 9.>

④ 전공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성취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4.11.><개정 2017.6.30.><개정 2020.2.18.>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연계전공, 융합전공, 전공심화 등 2개 이상의 교육과정(및 교과를)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6.3.6.><개정 2016.4.11., 2020.11. 9.>

⑥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필수로 한다.<개정

2016.4.11.)

⑦ 해양경찰과는 6월 이상의 승선실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해, 기관’ 등으로 전공을 구분하여 교육할 수 있다.〈개정 2009.6.15., 2016.4.11.〉

⑧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2.28., 2016.4.11.〉

⑨ 교육과정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⑩ 체육특기자의 학업수준, 전문성, 진로 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0.16.〉

⑪ <삭제 2023.6.21.〉

⑫ 역량융합 교육과정은 전공, 교양 외 별도의 ‘역량융합’이수 단위이며, 최소 4학점 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 〈신설 2021.3.29.〉

제25조의 2(연계전공 교육과정운영)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업계고교·대학교·산업대학교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연계전공을 표시한다.

제25조의 3(전공심화 교육과정운영) ①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 및 전문대학교 졸업생의 산업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전공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② 전공심화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4(교환학생 교육과정 운영) 본 대학교는 교환학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10.15.〉〈개정 2016.4.25.〉

제25조의 5(역량융합 교과과정 운영) ① 역량융합 교과과정의 편성은 융합전공부여와 전문직업 취업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② 수준별 과정(기초, 심화, 활용 등)으로 편성 운영해야 한다.〈신설 2021.3.29.〉

제25조의 6(융합전공 교육과정 운영) ①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마이크로 디그리 부여와 전문직업 취업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② 융합전공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수여한다.〈신설 2023.02.23.〉

제25조의 7(신산업 교육과정 운영) ① 신산업 교육과정의 편성은 나노디그리 부여와 전문직업 취업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② 신산업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신산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나노 디그리를 수여한다.〈신설 2023.02.23.〉

제26조(비정규특별과정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는 3개월 내지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4.25.〉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가 설치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4.25.〉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의 2(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등) ①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 인원은 본 대학교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정규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연간 20학점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모집 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및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1.11.>

제26조의 3(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4.02.28.>

제27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는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실험·실습·실기, 체육의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8.2.13.> <개정 2020. 7. 15.>

② 삭제<2010.2.8.>

③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고, 전공 관련 국가자격취득에 필요한 학점 및 융합교과과정 이수 선택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1.3.29., 2024.02.28.>

④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단, 국가자격취득에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을 초과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4.02.28.>

⑤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인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3.18.>

제28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원격수업)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11. 9.>

②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며, 수업은 08: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20.11. 9.>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9조(평가시험) ① 평가시험은 주관식 시험·객관식 시험·실기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11.>

② 역량기반 운영 교과목의 평가는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에 따라 수행준거·지식·기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직무능력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식 및 환류는 NCS 직무능력성취도 및 향상도평가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6.4.11.> <개정 2020. 7. 15.>

③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09.04.〉

④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사전에 공결 허가를 득한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3.〉

⑤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개정 2016.4.11.〉

⑥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기간과 시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시험대체를 인정하고 추가시험 실시 및 과제물 제출을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는 훈련기간 동안에도 시험대체를 인정한다. 〈신설 2017.10.16.〉

제30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양이나 실습 등의 교과목에 하여는 P를 급제로 할 수 있다.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	100~95	4.5	C°	74~70	2.0
A°	94~90	4.0	D ⁺	69~65	1.5
B ⁺	89~85	3.5	D°	64~60	1.0
B°	84~80	3.0	F	59이하	0
C ⁺	79~75	2.5	P		불계

③ Pass 과목에 대하여는 평균평점 산출 시는 제외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④ 추가시험 성적은 B+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24.02.28.>

제32조(성적의 취소 등)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학사경고) 성적 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졸업 및 수료) ① 교육과정에 의해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0.2.8., 2024.02.28.〉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 학점은 수업연한 2년인 학과는 60학점 이상, 3년인 학과는 9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 중 교양은 6학점 이상, 소속학과의 전공은 수업연한 2년인 학과는 18학점 이상, 수업연한 3년인 학과는 2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0.2.8.〉〈개정 2011.11.8., 2016.8.1., 2018.2.13., 2019.3.18., 2020. 7. 15., 2021.8.12., 2023.01.10.,

2024.02.28.)

③ 삭제 <2011.11.8.>

④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2호 서식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30학점 이상 <개정 2019.3.18., 2024.02.28.>

2. 2학년 수료: 60학점 이상 <개정 2019.3.18., 2024.02.28.>

3. 3학년 수료: 90학점 이상 <개정 2019.3.18., 2024.02.28.>

⑤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상의 미달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총장은「고등교육법」제36조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4.25., 2019.3.18.>

⑦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3.13.>

⑧ 제5조 제2항에 따라 3학기나 5학기에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학기마다 평점평균 4.2 이상, 전체 평점이 4.2 이상인 자에게는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2.28.>

제34조의2(학점의 인정) ① 제30조에 의하여 급제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해진 학점이수를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이나 학년말로 한다.

③ 실습과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지원에 의한 입영이나 복무 중에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5.3.>

⑤ 본 대학교와 국내·외 대학교 간에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개정 2016.4.25.>

⑥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군 복무경험 및 사회복무경험 포함)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9.2.28.> <개정 2020. 7. 15.>

⑦ 방송·통신(원격수업) 등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11. 9.>

⑧ 중앙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자로, 우리 대학 관련 학과에 입학이 확정된 자의 이전 평생직업교육과정 이수학점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3.29.>

제34조의3(학점인정심의위원회) 학칙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학점인정 심의를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2.28.〕

제35조(졸업유급) ①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유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

② 삭제 <2024.02.28.>

제 8 장 학생활동

제36조(학생회 조직) ①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 회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체적(퇴학), 졸업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은 상실된다.

③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중단된다.

제37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농성, 수업거부, 불온 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40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를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 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42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처벌)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체적된 자(타 교에서 체적된 자도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44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힘으로써 장차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5조(결석) 학생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삭제)
 3. (삭제)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0 장 등록금

제48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2021.8.12.>

②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신설 2011.1.11.><개정 2016.4.25.>

③ 등록금 산정에 있어 인상률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공고하는 산정방법에 의거,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1.11>

제48조의 2(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반환 한다.<개정 2011.1.1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1.1.11.>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1.1.11.>

반환사유발생 기준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개정 2011.1.11., 2021.8.12.〉

제49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의하여 납입금 감면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7.29.〉

제 11 장 장학금

제50조(장학금) 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25.〉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3. 대학교발전에 공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학사정관의 추천 및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자

③ 〈삭제 2013.6.25〉

제 12 장 교수회 및 위원회

제51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모든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0.5.3., 개정 2016.4.25.〉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장은 의장이 되며, 총장이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는 대학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
2. 학생지도
3. 장학 및 후생
4.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의2(평의원회) ① 본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5. 24.〉

제52조(교무위원회) ① 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5., 2016.3.22., 2016.4.25., 2017.4.21.〉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총장은 의장이 되며, 총장이 부재 시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총장이 판단하여 교수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무위원회로 교수회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소집 시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⑤ 삭제<2020. 7. 15.>

제53조(인사위원회) ①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 인사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명예교수, 겸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및 조교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5., 2019.7.30., 2019.12.17.>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기타 위원회) ① 대학교의 학사운영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4.25.>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직제

제55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0.15., 2016.4.25., 2019.7.30.>

② 총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과 조교를 둔다.

제56조(직제) ① 본 대학교에는 교학처, 기획홍보처, 사무국, 산학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2.10.15., 2016.4.25., 2022.04.25.>

② 각 처와 국에는 처장과 국장을 보하고, 처장과 국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정리하고 처와 국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0.15., 2016.4.25.>

③ 각 처와 국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5., 2016.4.25.>

제 14 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57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개정 2016.4.25.>

1. “종합정보관”
2. “학생생활관”
3. “대학교신문사”

4. “대학교방송국”
5. “평생교육원”〈2016.2.5.〉
6. <삭제 2022.04.25.>
7. “취·창업지원본부”〈2016.2.5.〉〈개정 2024.4.2.〉
8. “체육부”
9. “학생상담센터”〈2016.2.22.〉
10. “사회봉사센터”〈2014.2.28.〉
11. “현장실습지원센터”〈2016.2.4.〉
12. <삭제 2022.04.25.>
13.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신설 2020. 7. 15.〉
14. <삭제 2022.04.25.>
15. “교육혁신원” 〈신설 2022.04.25.〉
16. “강원도립대학교 인권센터” 신설 2022.04.25.〉
- ② 삭제〈2010.5.3.〉
- ③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7. “입학관리본부” 〈신설 2023.04.28.〉
18. “국제교류원” 신설 2023.04.28.〉

제57조의 2(부설기관) 삭제 〈2017.4.21.〉

제 15 장 특수법인 및 독립조직 〈개정 2017.12.29.〉

제58조(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특수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6.4.25.〉

② 산학협력단에 조교수 이상의 단장을 보하고, 별도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10.15.〉

③ 산학협력단의 정관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8조의 2(창업지원단) ①본 대학교에「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7조의2에 의한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창업지원단을 둔다.

②창업지원단 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7.29.〉

제 16 장 학교기업

제59조(학교기업)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4.25.〉

②“학교기업”은 교지(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7.29., 2014.12.24.〉

③“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범위, 순이익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7 장 보칙

제6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1년 6개월이상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외국인 학생) 본 교 입학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을 준용한다.

제62조(자체평가 실시)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10.6.30.>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6.30.>

제63조(학생지원) ① 장애로 인하여 입학 및 대학교생활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와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7.29.>

② 다문화가정 자녀 등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4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 변경은 총장이 발의한다.

② 발의된 학칙을 개정 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6.24.>

③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제출된 경우 총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④ 사전공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총장은 변경된 학칙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3.7.29.>

⑥ <삭제 2018. 5. 24.>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 ①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은 학칙개정절차를 준용한다. 단, 평의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②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시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하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4.]

제66조(학사운영에 대한 특례) 학칙 제28조(수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수업방식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부칙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28.)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 6.)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24.)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단, 학칙 제4조 학과명칭 변경사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과 명칭변경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1.12.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단, 학칙 제4조 학과명칭변경사항은 2002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학과 명칭변경은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2. 1.28.)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7. 2.)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 3.)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30.)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과의 개편 등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4. 6.25.)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9.23.)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3.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칙 제4조 학과 명칭의 변경사항 및 제25조 교육과정은 재학생 모두에게 해당하며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다음 각 호 규정 본문의 “실습과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도서관장”은 “종합정보관장”으로, “해양수산물출장소장”은 “환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1. 강원도립대학입시전형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제1항
2. 강원도립대학부속학생생활연구소규정 제9조제2항
3. 강원도립대학체육특기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
4. 강원도립대학교무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5. 강원도립대학총장임용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제2항
6. 강원도립대학총장학금지급규정 제3조제2항제2호
7. 강원도립대학학생활동에관한규정 제2조
8. 강원도립대학취업대책위원회규정 제3조제3항

부칙(2006. 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해양산업과, 동력기계시스템과 소속 재적생은 해양경찰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단,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는 경우 해양산업과는 해양산업 전문학사를 동력기계시스템과는 공업전문학사로 인정한다.

② 종전의 기계과, 기계자동차과, 환경시스템과, 환경위생과 소속 재적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 할 경우 각각 자동차과, 소방환경방재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8. 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해양생물자원개발과, 건설시스템과, 시각디자인과 소속 재적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각각 해양생명과학과, 건설토목과, 산업디자인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8. 3.18.)

이 개정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강원도립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의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 학칙 시행 시 타 규정의 명칭 및 본문의“강원전문대학”은“강원도립대학”으로 한다.

부칙(2008.10.21.)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컴퓨터 응용과 소속 재적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콘텐츠개발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9. 6.15.)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디지털콘텐츠개발과 소속 재적생이 2010학년도 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디지털콘텐츠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0. 2. 8.)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3.)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30.)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1.)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디지털콘텐츠과 소속 재적생이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는 컴퓨터인터넷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25.)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명칭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5조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2012년 7월 22일자로 조교수로 본다.

② 제55조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다음 각 호 규정 본문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 강원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2. 강원도립대학 해기품질관리규정
3.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수산과학연구소 규정
4. 강원도립대학부속 학생생활연구소 규정
5. 강원도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규정
6. 강원도립대학 실습선 관리규정
7. 강원도립대학 교원 해외연수규정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1. 강원도립대학 입시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2. 강원도립대학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서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3. 강원도립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호 중 “서무과”를 각각 “사무국”으로 한다.

4. 강원도립대학 종합정보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서무과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5. 강원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서무과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6. 강원도립대학 기성회 직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담당, 학생담당, 시설장비담당, 실습지원담당이 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팀장, 교무담당, 학생담당, 시설장비담당, 실습지원담당이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 중 “총무담당”을 “서무담당”으로, 같은 조 별지 서식1호 중 “서무과장”을 “강원도립대학총장”으로 한다.

7. 강원도립대학 조교 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서무과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8. 강원도립대학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9. 강원도립대학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10. 강원도립대학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11. 강원도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6조 제2항 “총무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한다.

12. 강원도립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13. 강원도립대학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서무과장”을 “총무팀장”으로, 제8조 제3항 “재학기간중의 거주지 및 연락처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은 즉시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재학기간 중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14. 강원도립대학 체육진흥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15. 강원도립대학 실습선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서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16. 강원도립대학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실습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중 “서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제7조 제2항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서식 제12호을” “서식 제12호를”로 한다.

17. 강원도립대학 해기품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중 “서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

18. 강원도립대학 실험·실습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19.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20.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서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부칙(2013. 1.18.)

이 개정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29.)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28.)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4.)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및 계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지적부동산과 재적생이 201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공학계열 지적공간정보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5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행정전문학사로 인정한다.

부칙(2015. 3.13.)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26.)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4.)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 재적생이 201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전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에서 기취득한 학점은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칙(2016. 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공학계열 건설토목과 재적생이 201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공학계열 재난안전토목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6. 2.22.)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11.)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립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의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제명과 본문의 “강원도립대학”을 “강원도립대학교”로 한다.

1. 강원도립대학 교수회 운영규정
2. 강원도립대학 계절학기수업 운영규정
3. 강원도립대학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4. 강원도립대학 입시전형관리위원회 규정
5. 강원도립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6. 강원도립대학 전임교원 능력개발 운영규정
7. 강원도립대학 졸업사정위원회 운영규정
8. 강원도립대학 교원 해외연수규정
9. 강원도립대학 수업반 편성규정

10. 강원도립대학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11. NCS 직무능력성취도 및 향상도평가 규정
12. 강원도립대학 NCS지원센터 운영규정
13. 강원도립대학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규정
14. 강원도립대학 종합정보관 운영규정
15. 강원도립대학부속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16. 강원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수칙
17. 강원도립대학부속 학생생활관 직원 관리지침
18. 강원도립대학부속 학생생활관회계 관리지침
19. 강원도립대학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규정
20. 강원도립대학 교수학습센터 운영규정
21. 강원도립대학 취·창업정보센터 운영규정
22. 강원도립대학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23. 강원도립대학 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
24. 강원도립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25. 강원도립대학부속 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
26. 강원도립대학부속 학생상담센터 규정
27. 강원도립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28. 강원도립대학 대학회계직원 규정
29. 강원도립대학 기성회회계 관리지침
30. 강원도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31. 강원도립대학 신분증 및 도서대출 열람증 발급규정
32. 강원도립대학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규정
33. 강원도립대학 학력증명서 발급규정
34. 강원도립대학 강사료 지급규정
35. 강원도립대학 포상지침
36. 강원도립대학 논문집 발간규정
37. 강원도립대학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38. 강원도립대학 교수 업적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
39. 강원도립대학 인사관리 규정
40. 강원도립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세칙
41. 강원도립대학 조교 임용규정
42. 강원도립대학 연구비 관리규정
43. 강원도립대학 겸임교원 임용규정
44. 강원도립대학 겸임교원 보수 및 수당 지급규정
45. 강원도립대학 초빙교원 임용규정
46. 강원도립대학 초빙교원 보수 및 수당 지급규정

47. 강원도립대학 체육특기자 관리규정
48. 강원도립대학 교무위원회 운영규정
49. 강원도립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
50. 강원도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운영규정
51. 강원도립대학 교재개발 운영규정
52. 강원도립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
53. 강원도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54. 강원도립대학 자체평가 규정
55. 강원도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56. 강원도립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57. 강원도립대학 학술논문게재 장려금 지원규정
58. 강원도립대학 교원 연구년제 운영 규정
59. 지속적 교육품질관리(CQI)에 관한 규정
60. 강원도립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61. 강원도립대학 국가장학(Ⅱ유형) 운영에 관한 지침
62. 강원도립대학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
63. 강원도립대학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
64. 강원도립대학 학생회 상벌규정
65. 강원도립대학 학생회 간부 승인규정
66. 강원도립대학 학생 단체 활동에 관한 규정
67. 강원도립대학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68. 강원도립대학 방송국 운영규정
69. 강원도립대학 신문사 운영규정
70. 강원도립대학 학생회칙
71. 강원도립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72. 강원도립대학 학생증 발급규정
73. 강원도립대학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74. 강원도립대학 체육부 운영규정
75. 강원도립대학 체육진흥 관리위원회 규정
76. 외국대학과의 파견 및 교환학생 운영규정
77. 강원도립대학 장애학생지원 규정
78. 강원도립대학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규정
79. 강원도립대학 실습선 관리규정
80. 강원도립대학 실습선 관리·운영지침
81. 강원도립대학 현장실습 운영규정
82. 강원도립대학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운영규정
83. 강원도립대학 해기품질 관리규정

84. 해기품질관리체제의 내부평가 운영지침
85. 해기품질관리체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
86. 해기품질관리 교육·훈련 운영지침
87. 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지침
88. 훈련기록부 처리에 관한 지침
89. 강원도립대학 실험·실습관리위원회 규정
90. 강원도립대학 실험·실습비 운영지침
91. 강원도립대학 실습선운항에 따른 직접경비 처리지침
92. 강원도립대학 기성회 규약
93. 강원도립대학 발전기금 출연자 예우규정
94.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95.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96.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
97.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회계관리지침
98.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
100. 연구노트 작성·관리 규정
101.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102.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수산과학연구소 규정
103.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 운영규정
104. 강원도립대학 학교기업운영세칙
105.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관한 세칙
106. 강원도립대학 공간조정위원회 규정
107. 강원도립대학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108. 강원도립대학 부설원격평생교육원 운영규정

부칙(2016. 8. 1.)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3.)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자연과학계열 해양생명과학과, 식품가공제과제빵과 소속 재적생이 2017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자연과학계열 해양생물양식과,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7. 3.22.)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21.)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자연과학계열 해양생물양식과, 바리스타제과제빵과 소속 재적생이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인문사회계열 해양양식식품과,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자연과학계열 해양경찰과 소속 재적생이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공학계열 해양경찰과(3년제)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공학계열 재난안전토목과, 지적공간정보과 소속 재적생이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공학계열 건설지적토목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공학계열 정보통신과, 컴퓨터인터넷과 소속 재적생이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공학계열 ICT드론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관광과 소속 재적생이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인문사회계열 호텔항공관광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2.>

⑥ 종전의 예체능계열 레저스포츠과 소속 재적생이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레저스포츠복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⑦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유아보육과 소속 재적생이 201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유아안전보육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9.10.2.>

부 칙(2017.10.16.)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13.)

이 학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5.24.)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28.)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24.)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31.)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및 제5조(수업 연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및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해양양식식품과 소속 재적생이 202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각각 자연과학계열 바리스타제과제빵과, 스마트해양양식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레저스포츠복지과 소속 재적생이 202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예체능계열 레저스포츠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호텔항공관광과, 공학계열 건설지적토목과 소속 재적생이 202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각각 인문사회계열 항공관광과, 공학계열 스마트시티건설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유아안전보육과 재적생이 202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전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5.>

② 유아안전보육과에서 기취득한 학점은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 7. 15.>

부칙(2019. 12.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47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는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및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공학계열 로봇스마트팩토리과, 스마트시티건설과 소속 재적생이 202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각각 공학계열 전기통신로봇과, 건설지적토목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555호, 2020.11.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8호,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0호, 2021. 8. 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별표1(전문학사 학위종별)은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항공관광과, 크루즈승무원과 소속 재적생이 202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각각 인문사회계열 호텔관광과, 항공크루즈서비스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의 공학계열 ICT드론과, 전기통신로봇과 소속 재적생이 202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공학계열 드론융합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584호, 2021. 11.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부칙(제598호, 2022. 4.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및 경과조치) ① 다음 각호의 규정을 폐지한다.

1. 강원도립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운영 규정
2. 강원도립대학교 직업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
3. 강원도립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 사업은 “교육혁신원”에서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1. 강원도립대학교 입시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 강원도립대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3. 강원도립대학교 GSU-MOOC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4. 강원도립대학교 종합정보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5.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6. 강원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7. 강원도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8. 강원도립대학교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9. 강원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10. 강원도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11. 강원도립대학교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12.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13. 강원도립대 규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당연직 위원에“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를 “2인”으로 한다.

14.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9조의1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15. 강원도립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16. 강원도립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17. 강원도립대학교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산학협력처장, 교육혁신원장”을 삽입한다.

18.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19. 강원도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0. 강원도립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1. 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2. 강원도립대학교 지속적 교육 품질 관리(CQI)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산학협력처장, 교육혁신원장”을 삽입한다.

23. 강원도립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에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4.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5.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6. 강원도립대학교 방송국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7. 강원도립대학교 신문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8. 강원도립대학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29. 강원도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30. 강원도립대학교 실험·실습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31.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에“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32.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33.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에“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34.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산학협력처장”을 삽입한다.

35. 강원도립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의2 제4항, 제4조의4 제1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중 “직업교육혁신센터”를 “교육혁신원”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중 “교수학습센터장”을 삭제한다.

제9조 제6항, 제10조 제2항 중 “직업교육혁신센터장”을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36. 강원도립대학교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를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로 한다.

37. 강원도립대학교 인성인증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수학습센터장”을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교수학습센터”를 “교육혁신원”으로 한다.

38. 강원도립대학교 GSU-MOOC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수학습센터”를 “교육혁신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중 “교수학습센터장”을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39. 강원도립대학교 학술논문게재 장려금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교수학습센터장 귀하”를 “교육혁신원장 귀하”로 한다.

40. 강원도립대학교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혁신원장”을 삽입한다.

부칙(제623호, 2023. 01. 1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4호, 2023. 02.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8호, 2023. 04. 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8호, 2023. 06.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제25조(교육과정) 제11항, 별표1(전문학사 학위종별)은 202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항공크루즈서비스과 소속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호텔관광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사회복지전공) 소속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경찰행정전공) 소속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경찰경호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사회복지전공)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공공인재융합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사회복지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⑤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경찰행정전공)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경찰경호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공

공인재융합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경찰경호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⑥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 휴학생의 복학 시점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과 또는 경찰경호과를 선택하여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25조제11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한다.

부칙(제642호, 2023. 09. 0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9호, 2024. 02. 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과 제25조 제1항, 제34조 제2항 및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4조 제5항의 개정학칙은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대학교 과 년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 연계전공)전문학사 자격을 얻었
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직 인)

학위번호 : 강원도립대학교 0000-000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2년, 3년)의 전 과정을 수료 하였
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 인)

[별표 1] <개정 2009.6.15., 2011.2.24., 2015.2.26., 2016.2.18., 2017.2.21., 2017.6.30. 2019.10.12., 2020. 7. 15., 2021.8.12., 2023.06.21.>

전문학사 학위종별

학위종별	해당학과	비고
해양생물전문학사	스마트해양양식과	
식품전문학사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해양경찰전문학사(항해전공) 해양경찰전문학사(기관전공)	해양경찰과	
공업전문학사	(ICT드론과), (로봇스마트팩토리과), (전기통신로봇과), (스마트시티건설과), 건설지적토목과, 드론융합과	
해양산업전문학사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소방환경방재전문학사	소방환경방재과	
관광전문학사	(항공관광과), (크루즈승무원과), (항공크루즈서비스과), 호텔관광과	
교육전문학사	(유아보육과), (유아안전보육과)	
경찰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인재융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경찰행정전문학사	경찰경호과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